

행정자치부

징계·시정요구

제 목 ○○○○공원 보강토 옹벽 공사중 하자 추진 부적정 등

기 관 명 경상남도

관 계 기 관 김해시

징계대상자 김해시 ○○과(전 ○○○○과) 지방○○○○ ○○○

※ 훈계대상자 ① 김해시 ○○과(전 ○○○○과) 지방○○○○○ ○○○

② 김해시 ○○○○과 지방○○○○○ ○○○

징계종류 경징계

내 용

지방○○○○ ○○○은 2012. 7. 16.부터 2016. 6. 2까지 동 공사 건 공사감독공무원으로서, 지방○○○○○ ○○○은 2011. 10. 17.부터 2015. 5. 28까지 ○○○○○○ 조성공사 실무담당으로서, 지방○○○○○ ○○○은 2015. 6. 3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동 건 공사감독공무원으로서 공사 추진 전반에 대한 업무를 각각 담당하였다.

경상남도 김해시(○○○○과)에서는 2013. 1. 7.부터 총사업비 9,960백만원을 투입하여 2015. 12. 15. ○○○○○○ 조성 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였다.

건 명	사업량	공사(용역) 기간	사업비 (천원)	도급자
○○○○ 조성계획수립 및 실시설계용역	공원조성계획 1식 실시설계 1식	2006.07.03~ 2007.07.02	316,500	○○○○○○○ 대표 ○○○
○○○○○○○ 조성사업 옹벽구조검토 및 단가변경 작성 용역	옹벽구조·형식 검토 1식 단가변경 1식	2012.08.29~ 2012.10.27	19,110	(주)○○○○○○○ 대표 ○○
○○○○○○○ 조성사업	체육공원 조성	2013.01.07~	8,646,000	○○○○(주)

	A=43,919㎡	2015.12.15		대표 ○○
○○○○○○ 조성사업 감리용역	시공감리용역 1식	2013.05.02~ 2015.12.15	537,000	(주)○○○ 대표 ○○
○○○○○○ 조성 전기공사	전기공사 1식 조명공사 1식	2015.07.15~ 2015.11.30	425,637	(주)○○○○○ 대표 ○○
○○○○○○ 조성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2015.3.27~ 2015.11.30	19,710	(주)○○○○○ 대표 ○○○

1. 시공중 보강토 응벽 균열 하자발생 대책 부적정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 제5조제2항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해당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그 밖에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품질·시공·안전·환경관리에 필요한 감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11조제1항에는 공사감독자는 공사진행 단계별로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고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 각호 2호 라목에서는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현황.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공사감독자는 감독업무 수행 중 공사현장에 다음 각 호의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발주청에 보고하고 이에 대한 조치지시를 받아야 한다. 라고 하고 있고 다음 각호 제1호에서는 천재지변 등 그 밖의 사유로 현장에 피해 또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공사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 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하자보수보증금)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1조의2(하자보수이행절차)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69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하

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기간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중 제71조의3에 따라 산정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김해시에서는 위 공사의 공사 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하면서 2014. 6.30.에 시공한 보강토 옹벽의 균열(28개소, L=5.6m)이 발생하는 등 변위가 발생된 당시 위 규정에 따라 이를 문서로 작성하고 상위 결재자에게 결재를 득하고 문서를 보관하여야 하였고 보강토 옹벽의 균열의 원인이 설계의 부실인지, 자재의 부실인지, 시공의 부실인지에 대하여 명확히 확인하여 책임 소재를 가리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사업비 등을 부담시키거나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하였어야 했다.

그런데 김해시에서는 보강토 옹벽의 균열이 발생하자 이에 대하여 시공사, 감리단으로 실정보고 등을 받거나 이에 대한 현장 조사보고서 등도 작성치 않은 채 담당자와 담당계장이 임의로 판단하여 시공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무대로 합벽 라이닝 옹벽(L=17m, H=10~11m, 200,000천 원 정도)을 설치하게 하였고 “2”와 같이 자재를 임의로 변경함으로서 당초 설계자의 구조검토 부실 등에 대하여는 알 수 없게 한 사실이 있다.

위 와 같이 시공사에게 무대로 합벽 라이닝 옹벽을 시공하게 함으로서 하자보증 금액에 포함되지 않아 향후 하자 발생 시 하자 보증도 할 수 없게 하였다.

〈하자보증 금액 내역〉

공종	계약금액(단위 : 천원)	보증기간	비고
부지정지공사	3,024,300	2년	
그 밖의 토목공사	2,368,900	1년	
창호공사	2,500	1년	
도장공사	5,300	1년	
미장타일공사	31,500	1년	
급배수, 난방 배관 공사 등	8,800	2년	
철물공사	10,600	2년	
석공사	7,100	2년	
도로공사	40,500	2년	
방수공사	18,000	3년	
관로공사	32,900	3년	
조경공사	466,400	2년	

또한 공사 준공 이후에도 기 옹벽 균열로 인한 옹벽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있자 2016. 4.28., 2016. 4.24.에 각각 방호시설(L=48m, H=3m, 15,252천원) 및 톤백 마대(L=36m, 3,600천 원)를 설치하고 향후 재차 옹벽을 쌓아 토사로 보강토 옹벽 일부를 보강(콘크리트 옹벽 L=100m, H=2m, 성토 2,000m³, 250,000천원)할 계획으로 총 268,852천 원의 예산을 낭비할 우려를 낳게 하였다.

2. 중요자재(관급자재)인 보강토 옹벽 블록 변경 업무 소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 공사 설계의 변경-1. 설계변경-가.에서는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다. 다음 각호 1)내지 4)에서는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규정 7.-가.에서는 계약담당자는 제6절 “1-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

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 발생 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해시에서 2007. 7. 2.에 완료한 이건의 실시설계 용역 시 보강토 옹벽 블록 및 그리드의 자재를 선정하였다. 따라서 이후 이 자재의 변경 시에는 설계자의 의도를 물어야 했고 이에 대한 구조적 안전 등을 검토하여 방침 결재를 받아야 했다.

그런데도 김해시에서는 당초 설계사에서 구조 검토하여 설계된 보강토 옹벽 블록 및 그리드를 설계자 의도를 묻지 않고 특정업체 제품(○○○○○○○○)으로 설계 변경을 통하여 도면 등을 변경하고 구매한 사실이 있다.

3. 웬스 자재 검수 업무 소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라고 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와 관련된 규정 및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다음 각호 제1호에서는 검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는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 공사 「시방서」 8-4 울타리(웬스)-1.2 자재(STS 304)- 1.2.1 재질에서는 STS PIPE KS제품(STS304)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계약서의 「디자인울타리 규격서」에서도 앵카볼트 등은 STS 304로 명기되어 있으며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6조(거래 정지) 제1항에서는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함에 있어 부당·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기타 계약조건 등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정지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 공사의 관급자재인 웬스(현장 설치도, (주)○○, L=284m, 43,456천 원)를 계약하고 이를 납품 받을 때는 당초 계약 내용(시방서 등)에 맞게 납품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검사하고 계약 내용과 다를 때는 이를 시정조치 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김해시에서 위 공사의 관급자재인 웬스(현장 설치도, (주)○○, L=284m, 43,456천 원)의 체결 부속인 앵카볼트 및 너트는 STS 소재로 제작되어 납품 설치되어야 함에도, 일반 STEEL 소재의 제품이 납품 설치된 부분에 대하여 검사 등을 소홀히 하여 감사 시점까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금번 합동감사 시 녹이 발생하였다고 지적하자 납품업체에게 전면 교체를 요구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조달청에 통보하여 거래 정지 요청 등을 하지 않고 은색 페인트를 임의로 도색(은폐행위)하고 있는 등 이를 부적정하게 조치한 사실이 있다.

4. 하자발생 관련 시공감리 업무 소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5조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67조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등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변경사유서, 설계변경도면 및 공사비 증감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청 방침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위 공사는 다중 이용 시설로서 공사중 보강토 옹벽 크랙이 발생하였으며 준공시 안전위험이 예상되는 것에 대하여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했다.

구분	위치	물량	금액	사유
낙하 방지 시설	옹벽 상부	그물망 헨스 L=64m H=6m	14,000천원	옹벽 높이가 10~12m 로 낙하 위험상존
차량 출입 금지 시설	관리도로 진입부	메쉬헨스 L=4m H=2m	600천원	관리 도로에 이용객 차량 출입 제한
본부석 안전시설	본부석 후면	그물망 헨스 L=120m H=4m	12,000천원	본부석 후면 절개지 낙하물 등 위험 상존

그러나 김해시에서는 2013. 5. 2.~2015. 12. 15.까지 위 공사 추진을 하면서 (주)○○ 대표 ○○○과 시공감리 용역을 추진하였으나, 동 공사 추진중 발생한 보강토 옹벽 균열과 관련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감리단장 ○○○)은 설계사, 시공사, 반입자재 등 하자원인을 명확하게 조사하고 관련 내용을 발주처에 서면으로 실정보고 하고, 발주처는 동 사항에 대하여 최종 결재권자(시장)에게 보고하여 시공 지시를 하였어야 함에도

관련 실정보고를 하지 않았으며 공사중에 인지한 상단 스탠드 PAP옹벽 위에서 떨어 질 수 있는 낙하물 등 위험에 대비하여 안전시설 추가설치 등 중대한 사항을 시공감리가 구두로 필요성을 발주처에 요구를 하였으나 서면(실정보고/승인)으로 발주처에 보고 하지 않는 등 감리 업무를 해태하였다. 그 결과 시공사가 부담한 합벽식 옹벽에 크랙으로 인한 붕괴 또는 구조물 전도의 하자가 발생 될 경우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며 또한 시공사에게 하자책임을 요청 할 수 없도록 하는 결과가 되는 등 감리 업무를 해태하였다.

조치할 사항 김해시장은

[징계] 위 관련자 중 ○○○은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징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위 관련자 중 ○○○, ○○○은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합벽식 옹벽 보강조치 및 PAP 옹벽 상단 안전시설 설치 등을 조속히 보완 설치 하시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아울러 동 업무와 관련하여 대책 및 사후조치를 서면으로 실정보고하지 않는 등 시공감리 업무를 태만히 한 감리단에 대하여는 벌점부과 등 행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